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지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944

발의연월일: 2021. 10. 25.

발 의 자:지성호·김형동·박대수

이명수 · 김석기 · 김예지

양금희 • 권영세 • 서일준

박 진 · 조태용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, 장애인,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4(세제혜택)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기업이 세금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대한민국에서의 신속한 적응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업의고용증진 대상이 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기업에 대하여 세금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이 되는 기

업의 고용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7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60세 이상인 근로자"를 "60세 이상인 근로자,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29조의7(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제29조의7(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내국인 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)의 2021년 12월 31 -----2024년 12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 라 한다)의 수가 직전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 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(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. 1. 청년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60세 이상인 근로자 -----60세 이상인 근로자,
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청년 등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증 가한 인원 수(증가한 상시근 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 다)에 400만원[중견기업의 경 우에는 8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100만원(중소기업 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200만원)] 을 곱한 금액

2	(생	먇
᠘.	G^	= $=$ $=$

② ~ ⑧ (생 략)

북한이탈주민인	근로자
2. (현행과 같음)	
② ~ ⑧ (현행과	같음)